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5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4일
발 의 자 : 김경우, 경만선, 권영희,
김용석, 서윤기, 신정호,
이상훈, 이준형, 이호대,
임종국, 장인홍, 채유미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로부터 관리·위탁하여 재단의 사무로 규정된 ‘스페이스 살림’ 운영 업무가 2020년말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등 여성 취·창업 관련 사업이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역할로 추진되고 있는 바, 서울시의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 위탁 조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위탁사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.
- 또한 현재 유명무실한 공무원 파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의 재단에 대한 위탁업무에 취·창업 역량강화를 추가하여 규정함(안 제16조)
- 나. 재단에 공무원 파견 조항을 삭제함(안 제18조 삭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복지증진 사업”을 “취·창업 역량 강화, 사회참여활동 촉진, 복지증진 사업”으로 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여성·가족·보육·저출산, 아동·청소년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, <u>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복지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</u></p> <p>제18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<u>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6조(업무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 <u>취·창업 역량강화, 사회참여활동 촉진, 복지증진 사업</u> 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